

의안번호	제551호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

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안

발의자	김정일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4년 4월 11일

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안

(김정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5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4월 11일

발의자 : 김정일, 이상정, 박봉순,
안지윤, 안치영, 조성태
이종갑

1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의 혼인 건수는 2013년 9,307건에서 2022년 6,185건으로 10년 만에 34%가 감소함. 또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(통계청)에 따르면, 국민 중 ‘결혼을 해야한다’고 생각하는 비중도 50%에 그쳤고, 특히 20~30대의 경우 38%에 불과해 청년층의 결혼 기피 현상이 확대되고 있음.
 - 청년층 결혼 기피 사유로 고용 불안, 청년 실업, 일·가정양립 곤란, 청년층 삶의 우선순위 변화(“결혼, 자녀”→“노동”) 등의 요인과 함께 결혼 및 주거 비용의 상승 등 경제적 부담도 제기되고 있음.
- 이에 결혼자금 마련 및 주거 지원 등을 포함한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확산하고 삶의 안정성과 행복감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(안 제2조)
-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5조)
-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6조)
-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, 기관,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. (안 제8조)
-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시·군 및 유관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. (안 제9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비용추계 : 붙임
- 협의 :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
- 조례안예고 : 예고 대상(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확산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작은 결혼식”이란 획일적인 형태 및 허례허식(虛禮虛飾)을 벗어나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고 신랑신부 당사자의 개성과 결혼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간소화된 결혼식을 말한다.
2. “결혼이민자”란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계획 수립)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의 여건에 맞는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
2.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
3. 그 밖에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「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 사업) ① 도지사는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조사·연구
2.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 결혼 의식 확산
3. 결혼 비용 지원
4. 공공시설의 예식장 제공
5. 신혼부부 주거 지원
6. 예비 신혼부부의 건강검진비 지원
7.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지원
8. 그 밖에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업

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대상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) 도지사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결혼 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기업 등 지원)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, 기관,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체계) 도지사는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시·군 및 관련 기관,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(사무의 위탁)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 중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결혼 및 출생·양육”을 “출생·양육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.

관계법령

□ 건강가정기본법

제8조(혼인과 출산) 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·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·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
□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가정의례(家庭儀禮)의 의식(儀式)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·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·조장하여 허례허식(虛禮虛飾)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가정의례”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(成年禮), 혼례(婚禮), 상례(喪禮), 제례(祭禮), 회갑연(回甲宴) 등을 말한다.

제3조(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·시행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건전한 가정의례의 개발·보급 및 실천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가정의례 관련 학술기관·단체 등의 가정의례에 관한 연구

제6조(보조금의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7조(혼인예식 장소의 제공)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·단체 및 국·공립 대학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, 회의실, 그 밖의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.

□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재한외국인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2. “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”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결혼이민자”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.

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의 혼인건수가 감소하고,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기피 현상이 확산 되고 있어, 결혼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확립 등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

2. 비용 발생 요인

-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충북행복결혼공제 등 사업 예산

3. 관련조문

- 안 제6조(지원 사업), 안 제7조(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충북행복결혼공제 12,062백만원
 - $(800\text{천원} \times 577\text{명} \times 12\text{개월}) + (800\text{천원} \times 431\text{명} \times 12\text{개월}) + (600\text{천원} \times 342\text{명} \times 12\text{개월})$
≒ 12,062백만원 * 기본형 577명, 정부지원형 431명, 농업인 등 342명
-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'24년 754백만원, '25년 이후 1,358백만원
 - '24년 최대 $600\text{천원} \times 1,256\text{쌍}$ ≒ 754백만원
 - '25년 이후 최대 $600\text{천원} \times 2,263\text{쌍}$ ≒ 1,358백만원

나. 추계 결과 : 2024년부터 향후 5년간 66,496백만원 소요

- (충북행복결혼공제) 연간 12,062백만원, 향후 5년간 60,310백만원 소요
- (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) 연간 '24년 754백만원, '25년 이후 1,358백만원
향후 5년간 6,186백만원 소요

다. 재원조달방안

- (충북행복결혼공제) 국비 8%, 도비 18%, 시군비 18%, 기타(기업·자부담) 56%
- (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) 도비 50%, 시군비 5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〈 연도별 비용 추계표 〉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소계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
합 계(2개)	66,496	12,816	13,420	13,420	13,420	13,420
충북행복결혼공제	60,310	12,062	12,062	12,062	12,062	12,062
국 비(8%)	4,655	931	931	931	931	931
도 비(18%)	11,040	2,208	2,208	2,208	2,208	2,208
시군비(18%)	11,035	2,207	2,207	2,207	2,207	2,207
기 타(56%)	33,580	6,716	6,716	6,716	6,716	6,716
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	6,186	754	1,358	1,358	1,358	1,358
도 비(50%)	3,093	377	679	679	679	679
시군비(50%)	3,093	377	679	679	679	679